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과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헌법에서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현대 민주 국가에서도 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벌써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고,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도 특권 폐지를 위해 헌법개정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보였던 태도나,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 문제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은 당연히 아니지만, 특권 포기를 주장하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 뒤로 숨는 행위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 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면책특권의 오남용이 문제된 사례들은 무수히 많지만, 최근 김의겸 의견을 둘러싼 면책특권 논란은 여러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문제된 것들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논란되고 있는 것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혐의로 김의겸 의원과 함께 고소·고발된 ‘더 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경찰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진 바 있다. 검찰에서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면책특권 폐지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김의겸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이렇게 격한 반동들이 나오는 것은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이숙 우화의 늑대와 양치기소년 이야기처럼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의혹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김의겸 의원이 이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도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하다가 민주당 대변인에서 교체될 정도로 고집을 세웠

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사실 확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2007년 대법원 관례에 따르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김의겸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계속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으로 인해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솔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김의겸 의원 개인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뿐만이 아니라, 면책특권 자체의 폐지까지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면책특권 등은 헌법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하지 못한다. 또한, 그 도입 배경이나 기능, 선진외국의 헌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지는 경솔한 것이 될 수 있다.

정말로 독재적인 권력이 등장하고, 야당을 억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국회의 비판과 통제는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면책특권조치 없다면 정말로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

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도 면책특권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 아니거나,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직무상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짓이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 이를 고집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김 의원의 허위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나마 EU대사의 말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했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의 없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김 의원의 말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에 근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의심마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더

탐사'와의 협업은 그 고의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과연 '더 탐사'는 고의인데, 김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고, 단지 이용만 당한 것일까?

면책특권의 존재 이유가 정부가 의회를 압박하는 것을 막고, 의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압박이 아니라, 의회 내의 자율적 통제는 현행헌법상으로도 면책특권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강변으로 인해 그를 대변인에서 교체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징계 논의는 왜 거론조차 않고 있는 것일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특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본래 취지에 반하여 오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만, 그것이 해당 국회의원, 또는 해당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